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공고

사업 신청 · 접수 FAQ

2025. 1.

- ※ 「2025년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주요 질의사항 위주로 FAQ를 작성하였으며, 답변 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FAQ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선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개요 및 문의처]

1 예비 신청은 무엇인가요?

답변

- ☞ 예비 신청은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의 의사를 밝히는 사전단계입니다. 예비 신청을 완료한 대학에 한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예비 신청은 예비신청서와 제출 공문을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공고 별첨자료에서 관련 양식과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예비신청 완료 대학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은 본 신청 불가

2 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 예비신청 후 본신청 기간에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참고 사항

본신청 절차

①회원가입 (신청대학의 대표자 명의) → ②K-startup 접속→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사업 신청 클릭 → ⑤'**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클릭 → ⑥신청서 작성 필수값 동의(개인정보 등) → ⑦기본정보(일반현황 인력정보 등) 입력 → ⑧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300MB 유의) → ⑨제출 → ⑩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접수상태 '제출완료')

3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 불가합니다.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은 반드시 동 사업에 신청하는 **대학의 대표자(총장) ID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전담조직의 장, 전담인력 등의 K-Startup 계정으로 대리 신청 불가

4 전담인력 전원이 K-Startup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답변

- ☞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구성원 전원은 온라인 사업 세부 신청 단계(담당자 입력)에서 전체 인력에 대한 정보를 필수로 기입해야하므로, 모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기존에 K-Startup 회원가입을 완료한 경우, 소속기관 확인 필수(소속기관이 현재와 상이한 경우, 회원정보 변경을 통해 현 소속기관으로 변경 후 입력 요망)
 ** 회원 가입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입이 필요한 인력은 사전 회원가입 진행

5 사업 신청 시, 기업(기관)에 대한 기업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사업 신청대학은 '국세청사업자확인', 'SCI기업실명인증', '공동인증서인증', '금융인증서인증' 중 1개의 방법을 택하여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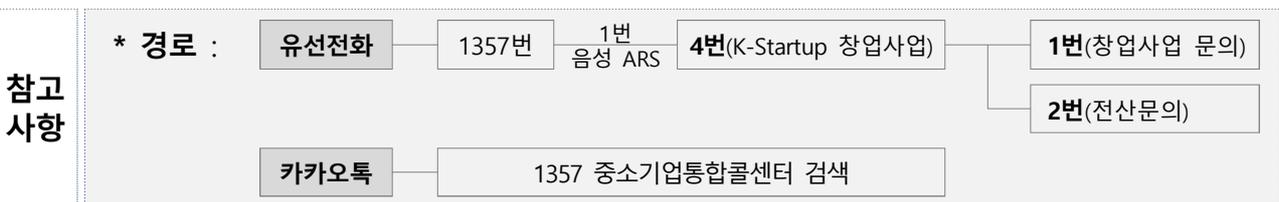
참고 사항

인증방법

- ① (국세청사업확인)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를 통한 인증
- ② (SCI기업실명인증) 정보 미등록 상태인 경우, 사이렌24 (www.siren24.com)에서 신청 후 인증
- ③ (공동인증서인증) 기업용 공동인증서 사용(은행 및 범용)
- ④ (금융인증서인증)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사용

6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시스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파일 업로드, 시스템 사용방법 등)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의 전문상담원을 통해 유선 상담 및 원격지원 가능합니다.



7 본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K-Startup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PMS) 이용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학은 사전에 PMS 매뉴얼 숙지 권장(사업 신청 및 시스템 이용 등)



8 K-Startup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K-Startup 누리집 접속 후,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글을 작성 하면,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 운영]

1 신청 자격

1 신청 가능 지역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 신청대학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공고상 신청가능지역에 소재한 대학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가능 지역) ① 전남, 광주, 제주에 소재한 대학
② 세종, 충북, 대구, 울산에 소재한 대학

2 전문·방송대학, 대학 소속의 기술지주회사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모집공고 신청자격 요건인 「고등교육법」제2조 1, 2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1, 2, 3, 3의 2호에 해당하는 대학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본교, 캠퍼스, 분교가 다 있는 경우,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본교(캠퍼스 포함), 분교 중 1개 신청대학의 대표자(총장) 명의 로만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4 A캠퍼스로 신청하고 전담조직은 B캠퍼스에 있어도 되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캠퍼스에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캠퍼스의 창업지원기능, 기존 창업지원조직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동 사업 선정 시 전담조직은 해당 캠퍼스 내 필수 위치하고, 회계처리 등 운영사항 전반이 해당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지원사업 사업비를 운영·관리 중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신청·협약 주체(신청대학)와 회계처리 주체(산학협력단 등)가 상이할 경우,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회계처리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을 '참여기관'으로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2 참여 · 협력기관

1 참여기관과 협력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관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에 소속된 기관이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신청대학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로 산학협력단 등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협력기관은 동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대학과 협력하는 권역 내외 지자체, 타 대학(해외대학 포함), 기관, 연구소, 기업, 투자사 등 지역 창업생태계 및 지역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기관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

2 참여기관과 협력기관을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합니다. 신청대학의 '참여기관'은 대학(본교)의 실질적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협력기관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타 대학의 협력기관으로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3 협력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은 '창업자 발굴', '자금 및 투자 연계' 뿐만 아니라 보유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대학과 창업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

4 협력기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학은 타 대학 및 창업지원기관 등과 자유롭게 협력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다수의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단순 양적 접근 지양) <p>*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창업중심대학'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거나 '창업중심대학'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p>
----	---

5 협력기관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합니다. 모든 사업비는 전문기관과 협약하는 당사자, 즉 해당 창업중심대학에서만 일괄 관리·집행할 수 있습니다. <p>* (주의) 협력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p>
----	--

6 협력기관 구성 시 기관의 부서 간 MOU 협약체결도 인정되나요?

답변

☞ 기관의 대표자 간에 체결한 MOU 협약만 인정됩니다.
(기관의 부서 간 MOU 협약체결 사항 불인정)

7 협력기관 구성 시 공문과 MOU 협약서 모두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 협력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 또는 MOU 협약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단, 제출한 증빙 내 창업중심대학 관련 세부 협업내용(해당 협력이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포함)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행정실(사무공간)

1 전담조직 행정실(사무공간) 구성에 대한 세부 조건이 있나요?

답변

☞ 전담조직 행정실 구축은 전담조직의 장과 전담인력이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동일 건물 내에 한하여 구축 가능합니다.

- * 행정실 구축 시 전용면적 기준 전용공간의 합이 100㎡, 약 30평 이상이어야 함
- ** 일부가 분리되어 별도 부서 및 센터(타지역 포함)에서 근무 불가

2 사업 선정 후,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할 수 있나요?

답변

☞ 동 사업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전담조직

1 전담인력은 창업중심대학 사업에만 참여해야 하나요?

답변

☞ 전담인력은 타 지자체,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창업중심대학' 사업 만을 100%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 * 사업계획서 '1-3. 전담조직 구축현황'에 해당 전담인력에 대한 경력 등 상세정보 기재, K-Startup 참여 인력 등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증빙 제출 필요

2 기관의 총괄책임자를 전담 조직의 장으로 선임해도 되나요?

답변 총괄책임자는 '신청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뜻하며, 대학의 경우 총장을 말합니다. 총괄책임자가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만큼 단순 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를 전담조직의 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전담조직의 장

창업중심대학 소속으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신청대학의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창업(또는 창업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대학교무위원급 또는 학무위원급으로 구성)

3 전담조직을 신청대학 내 타 조직 하위에 편성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동 사업 전담조직은 타 부서(조직)의 하위로 둘 수 없으며, 타 사업단 및 조직으로부터 독립·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에 속한 전담인력은 타 사업TF, 타 조직 하위(파견) 형태의 부서 등에 임시 발령 불가

4 전담조직의 장도 동 사업만을 100%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의 장은 겸직인력(동 사업 업무 일부 수행)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5 전담조직의 장의 인건비(또는 수당)는 지급 가능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창업중심대학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월 1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참여율에 따른 겸직인력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 업무수행에 따른 직책(보직) 수당으로 집행 가능

6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동 사업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신청대학은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등을 본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상 전담인력은 최소 8인 이상 필수 구성해야 합니다. 단, 신청대학의 소속된 자(4대 보험 가입 기준)가 아닌 경우는 사업 인력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7 전담인력의 창업 관련 경력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재 신청대학에서 근무 중인 인력의 경우 '최초 근무 시작일~모집공고일 ('25.1.13.)까지로 산정하고,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 '창업관련 업무 최초 시작일~신청대학 채용일'까지 산정하면 됩니다.

* 근무기간·내용 등은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경력증명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8 전담인력의 창업 관련 분야 경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창업기업 관리·지원업무 수행,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경력 제외), 대학 산학협력단, 전국 창경센터 등 창업 유관기관 근무 이력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사, 회계 등 단순 행정·경영지원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창업지원 유관기관에서 '인사·재무·경영지원·시설관리' 등으로 근무한 경우 불인정

참고 사항	전담인력 경력 산정기준(안)		
	구분	경력 인정	경력 불인정
	창업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등 출연·보조 창업 지원사업 민간기관의 창업지원 업무 대학 산학협력단, 전국 창경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재무·경영 등 행정업무 창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한 업무
	창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반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창업(음식점 등)

9 전담인력 외 겸직인력도 구성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예산 집행·관리 인력 등 지원 인력을 제외하고는 겸직 인력 구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인력에 대한 급여성 명목의 인건비 지급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특정 업무(회계, 직책 등)에 대한 수당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겸직인력 수당은 창업중심대학의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10 채용 예정인 전담인력의 채용 기한이 있나요?

답변  전담조직 설치·운영을 위한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전담인력 최소 8인, 최소 5인 이상 창업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내 채용예정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채용 예정 인원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채용 완료해야 합니다.

*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구성 미이행시 지침에 따라 협약해지 등 제재 조치

5 자기부담사업비 · 투자금

1 재원은 사업 신청 시점에 3년 치를 모두 조성해야 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공문 또는 확약서를 통해 3년에 대한 재원조성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해당 재원을 연도별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수 재원 조성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사업비 최소요건 : 연도별 4억원 (3년 총 12억원)

** 투자재원 최소요건 : 연도별 3억원 (3년 총 9억원)

참고 사항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1호 [주관기관 제재 및 환수 조항]

제재등급	기 준	제재 및 환수기준
협약해지	○ 주관기관 선정 필수요건(자기부담사업비 확보 등) 불이행 등으로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3년)

2 자기부담사업비 및 투자금 재원확보 여/부 작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기부담사업비 및 투자금 재원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증빙 가능 여부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창업중심대학 자기부담사업비 및 투자재원 확보 여/부 작성 기준 >

구 분	통장 입금내역 증빙 가능	통장 입금내역 증빙 불가능
주요내용	- 확보 여부: 여 - 제출 시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확보 여부: 부(25년 0월 예정) - 확약서 또는 공문 등 제출 필수

* 확약서, 공문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창업중심대학 사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및 금액 명시 필수

3 자기부담사업비와 투자금을 외부 재원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답변

☞ 자기부담사업비의 경우 외부재원(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구성 가능합니다.

☞ 투자금 필수 조성액(연도별 최소 3억, 3년 총 9억)의 경우 외부재원이 아닌 대학별 자체 투자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4 자체 투자재원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신청대학의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이 출자·투자한 펀드의 조성 및 집행 등 운용 전반을 대학이 담당하는 재원에 한합니다. (펀드 전체 조성금액과는 상관없이 신청대학이 출자한 금액만 인정)

5 투자 재원은 반드시 협약기간 내 전부 집행해야 하나요?

답변 ☞ 창업중심대학은 협약기간 내에 연도별 조성한 투자재원을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 참여기업에 투자하되, 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22년~)에도 투자 가능

6 자기부담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전부 집행해야 하나요?

답변 ☞ 연도별로 조성한 자기부담사업비는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점까지 100% 집행되어야 하며, 미집행 시 제재 및 감점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7 자기부담사업비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연도별 자기부담사업비는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금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해지 등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신청 시 계획한 자기부담사업비와 투자금의 규모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 당초 계획한 자기부담사업비와 투자재원의 총액은 향후 감액 불가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경과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본 신청 접수 기한(2025.2.7, 16:00까지)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만 접수처리 되며,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오기재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이 있나요?

답변	<p>☞ 사업계획서 분량은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50페이지 이내입니다. 또한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300MB) 이내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p>* 업로드 용량은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파일을 모두 포함 ** 업로드 파일은 신청화면 상 파일 업로드 명에 따라 구분하여 업로드</p>
----	---

3 대학(본교)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업지원 실적은 분교, 캠퍼스의 창업지원 실적을 포함해서 작성 가능한가요?

답변	<p>☞ 불가합니다. 지원실적 등은 신청대학(협약주체)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p>
----	--

4 창업지원 실적 등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답변	<p>☞ 창업지원 실적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21년~'23년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제외)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내 실적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이 불인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	---

5 제출기한 내 실적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운데 사업계획서에 실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p>☞ 불가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실적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p>
----	--

6 '창업교육(창업강좌) 운영실적'과 관련, '창업강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p>☞ '202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창업강좌 교과목 관련 키워드(지침서 발췌)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p>"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등</p></div>
----	---

7

프로그램 운영 시,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된 (예비)창업기업 외 권역 내 타 (예비)창업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지원 지역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창업중심 대학 선정 기업 외 권역내 창업기업,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합니다.

8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 지정된 파일 형식이 있나요?

답변

☞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지정된 양식 및 파일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또한, 업로드된 파일은 PDF로 자동 변환 저장되므로, 사업신청 완료 후 변환 오류(글씨 깨짐 등)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대학명)_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hwp (파일명 임의 변경 불가)

< 제출서류별 파일 형식 >

구 분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파일형식	hwp, pdf	hwp (필수)	hwp, pdf

[기타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시 다른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별도 불이익 등 조치가 있나요?

답변

☞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이 상당 부분 상이하거나 미흡한 창업중심대학에 대해서는 최종평가 등을 통해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